

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1 - 19호

##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우천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18일

### 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1년 5월 24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내용 | 찬성여부 |    | 의견 | 비고 |
|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|
|        | 찬성   | 반대 |    |    |
|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|

#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이우천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21. 5. .

발 의 자 : 이우천, 성복임, 장경민,  
이전행, 홍경호, 신금자,  
이길호, 이희재, 김귀근

## 1. 제안이유

- 군포시의회에 입법고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)
- 나.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규정 (안 제2조)
- 다. 입법 및 법률고문 자문사항 등 규정 (안 제3조~제4조)
- 라.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 
(안 제5조~제6조)
- 마. 수당 및 소송비용, 시행규칙 등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~제9조)

##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고문의 위촉) ① 군포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장은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입법 및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입법고문: 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,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
2. 법률고문: 경기도 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

③ 법률고문은 군포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.

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3조(자문사항)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
3.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·처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
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
3.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법률사항

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.

제4조(자문요청 등)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기)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해촉)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
3.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4.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5. 불성실한 자문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회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6.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수당 및 소송비용 등)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,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월정수당과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자문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은 그 임기동안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승낙서(제2조제4항 관련)

승 낙 서

본인은 「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 
군포시의회 입법(법률)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직위

성명

(인)

군포시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위촉장(제2조제4항 관련)

# 위촉장

직위

성명

귀하를 「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 
군포시의회 입법(법률)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~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)

년    월    일

군포시의회 의장 (직인)

[별지 제3호서식]

### 자문실적부(제8조 관련)

| 구분<br>종류               | 자문건명 | 의뢰연월일 | 의뢰내용 | 회신연월일 | 회신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송사건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|
| 이의신청에<br>대한 자문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|
| 의안입안 및<br>심의에 대한<br>자문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|
| 법령해석 등<br>법률자문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|
| 기타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|

※ 자문방법에는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 기재

※ 의뢰내용 및 회신내용은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